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25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김병기・이기헌・모경종

윤건영 • 민병덕 • 박상혁

유종군 • 정동영 • 박 정

이개호 • 한준호 • 임미애

이정문 · 정성호 · 황운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증인출석"을 "서류 등의 제출 또는 증인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다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u>증인출석</u> 등의 의무) 국회	제2조(서류 등의 제출 또는 증인		
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u>출석</u> 등의 의무)		
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			
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			
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			
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			
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			
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다른</u> 법			
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u></u> 「개인정보 보호		
에 따라야 한다.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u>관한 법률」 등 다른</u>		